##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9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 민홍철·최인호·신정훈

김윤덕 • 이용선 • 강선우

김홍걸 • 박영순 • 홍기원

윤재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 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방지와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소음대책사업의 계획 및 연차별 지원사업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2021년 4월 8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법률 제17226호, 2020. 4. 7. 공포)은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기구화하여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다만, 운항절차, 공항수용능력의 설정·변경 등 정책의 변경은 소음대 책지역의 소음도 및 예상 소음영향도(WECPNL)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와 관련한 해당 정보의 제공과 의견 수렴 등의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소음대책 논의에 필요한 정보로써, 해당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기 운항 관련 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 해당 내용의 정보공유와 공항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
치 및 기능) ① (생 략)	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u>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해당</u>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
	<u>견을 들어야 한다.</u>
②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